

# 재 무 과

위원회별	소관부서	감사항목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계	완결(계속추진)	추진중	
총무위원회	재 무 과	11	5	5	3	2	

##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무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비고
17	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읍사무소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나, 공청회·설문조사 등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li> <li>○ 여론수렴 후 조기에 활용방안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축 읍사무소 이전과 동시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7월 결정된 읍사무소 이전 및 신축 방침은 <u>로타리주변 문화공간 및 군민휴식처 마련</u>이 이전의 이유 중 중요한 부분이었음.</li> <li>○ 이에, 지난 5. 31지방선거에서 현재 강석진 군수가 「거창읍사무소 부지를 군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군수선거 공약사업으로 설정하고, 선거 토론회 및 매니페스토 운동단체 등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방법까지 제시</li> <li>○ 그 후속조치로, 제38대 거창군수 취임 후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내부검토를 거쳐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도 당초예산에 관련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함과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군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음</li> <li>○ 향후, 금년 12월까지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현 건물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 받아 읍사무소가 이전됨과 동시에 군민을 위한 문화 및 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li> </ul>	추진중	

##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 무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8	조달물품 구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에서 구입하는 조달물품에 대하여 기종이 동일하고 유사한 물품이 단가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부서별로 구입하는데 기인한 것임</li> <li>○ 기종이 동일하고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주무부서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에 확보된 예산으로 일괄 조달구입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물품은 정부에서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사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서 발주(요청)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는 제3자단가 계약 형식으로 발주 및 납품 운영되고 있음</li> <li>○ 동일 또는 유사한 기종에서 단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시점이 1년 단위가 아닌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단가계약 체결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계약체결 시마다 동일 또는 유사한 기종에 대하여 단가 변동이 있는 관계로 발주시점에 따라 변경된 단가로 계약이 성립되어 단가차이가 있는 실정임</li> <li>○ 앞으로는 기종별로 총괄사업부서의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조기에 일괄 발주하여 단가 변동에 따른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음.</li> </ul>	완 결	

##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 무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19	국, 공유, 잡종 재산 관리 철저	○ 도유재산인 읍사무소 부지와 거창소방서 부지, 거창전문대 일부 부지를 상호 교환하게 되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텐데 상호 교환 또는 양여를 적극 검토하여 사유재산 거래 개념이 아닌 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올바른 지혜를 발휘하여 군의 이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 바람	○ 재산의 소관을 달리하는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라도 무상 사용은 가능하나 무상양여는 불가하며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환 가능하나, 상호교환을 위한 자산평가 와 함께 승인 등 절차를 필요로 함 -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환 가능한 재산을 물색하여 도와 협의하는 등 효율적 재산관리에 최선의 방안 강구	추진중	

##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 무 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20	독가촌 미 불하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9년 당시 행정에서 화전민 등 독가촌 주민을 집단으로 이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공유지 등에 취약지 대책사업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li> <li>○ 무지한 농민들이 약정사항 등 계약위반으로 무상양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 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양여 가능 대상지는 '91년, '95년 2차례 양여하였고, '99년 희망 경작자에게 매각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양여 : 28명 43필지 135,246㎡</li> <li>- 매 각 : 13명 24필지 156,809㎡</li> </ul> </li> <li>○ 약정 위배사실의 경우 진정, 탄원, 소송 등을 통한 해결을 갈망했지만 법상 불가한 실정 으로, 대상 주민을 상대로 간담회개최</li> <li>○ 주민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06. 3. 2(목) 14시 ~ 16시</li> <li>- 장 소 : 면사무소/신도성 외 20명</li> </ul> </li> <li>○ 개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양여 법상 불가사유 설명</li> <li>- 수의계약 매각 : 예정가격 1천만원 미만재산</li> <li>- 매수희망 시 관련법규 내에서 적극 추진</li> </ul> </li> </ul>	완 결	

##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무과)

연번	감사항목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완결여부	비고
21	채납세 징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불, 무재산, 납세태만, 생계곤란 등 고액, 상습채납자에 대하여 일제징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및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li> <li>○ 채납세 징수에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는 징수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양양 토록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도 지방세 채납액 장수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일정 : 3월, 6월, 9월, 12월, 연도폐쇄기(2월)</li> <li>- 징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년도채납액 : 1,216백만원</li> <li>● 목표액 : 298백만원(25%)</li> </ul> </li> <li>- 주요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액 : 453백만원(152%)</li> <li>● 일제정리추진(4회) : 3월, 5월, 6월, 10월</li> <li>● 1백만원이상 고액채납정리: 199백만원</li> <li>● 신속한 조세채권확보 : 1,952백만원</li> <li>● 번호판영치(2회) : 104대, 40백만원</li> <li>● 결손처분(2회) : 31백만원</li> </ul> </li> </ul> </li> <li>○ 징수포상금 예산편성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 예산액 : 6,000천원</li> <li>- 2006년도 예산액 : 7,500천원</li> </ul> </li> </ul>	완 결	